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,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18조의2)
 - 특별회계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